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구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 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9. 6. 30. 19:34경(갑 제5호증) 부대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봄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9. 7. 3.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2. 17. '망인의 부상은 당직 근무 중 저녁 식사 후 당직 관련 업무와 무관한 동료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다친 사적 행위이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망인의 법정대리인 은 위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0. 7.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망인은 2019. 8. 1.부터 부대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휴무일인 2019. 8. 12. 저녁경에 복통이 발생하여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2019. 8. 15. 16:01경 '폐혈성 쇼크, 독소 쇼크(의증), 수술부위 감염(의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사망의 원인 ※ (나)(다)(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	(가)	직접사인	폐혈성 쇼크
	(나)	(가)의 원인	독소 쇼크(의증), 수술부위 감염(의증)
	(다)	(나)의 원인	-

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 만을 적습니다.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
---------------------------	--	--------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3. 23. '망인이 스케이트보드를 탄 행위의 공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상병 악화가 공무와 연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공무 또는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2019. 6. 30. 일요일에 당직 근무를 하였고, 같은 날 19:34경 저녁식사 후 부대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었는바, 부대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연경장에서 식사 후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은 직무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이므로, 이를 당직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콜콜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봄통의 골절, 폐쇄성' 상병의 악화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

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사고가 공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망인은 2019. 7. 3.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아 약 14주간의 안정치료가 필요하였는데, 약 4주간의 치료만 받은 후 2019. 8. 1.부터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수행한 점, ② 망인이 조기 복귀를 하게 된 이유는 동료 대원들의 휴가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③ 망인은 원발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목발을 짚고 거동을 하며 근무를 하였던 점, ④ 망인이 2019. 8. 11. 일요일 08:00경부터 24시간 동안 당직 근무를 수행한 후 망인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봄통의 골절, 폐쇄성'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

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 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2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을 제2, 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6. 30.은 일요일이고, 이날은 망인이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이었다. 망인은 부소대장으로서 지휘 요원이었는데, 「의무경찰 지휘요원 가이드 북 2020」 책자에는 당직 근무의 방법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근무 방법

■ '당직근무'시 휴게시간 4시간 외 정위치 근무

- 소대장·부소대장은 현업 대상자로 인정, 당직근무 시 1일 4시간 휴식시간 외 20시간 초과 근무인정
- 휴게시간 4시간 외 여타 시간은 정위치 근무 또는 취약지 순찰 위주로 당직 근무토록 실정에 맞게 근무 체계 개선

22:00 이전	22:00~02:00	02:00~06:00	06:0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행정반 • 1명 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휴게 • 1명 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휴게 • 1명 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행정반 • 1명 순찰

※ 상기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점호 등 부대 활동 시 전원 참가하고 06:00 이후에는 휴게 불가

■ 당직근무 방법 : 행정반에서 정위치 근무

- 행정반 상황 유지 및 구타 발생 우려 장소(복도·생활실·공부방·욕상·취사장 등) 집중 순찰
- 순찰함 생활실 내부 설치 등 취약지 순찰노선 일제 정비

유의사항

■ 당직근무 시 행정반에서 가면을 쓰하거나 순찰표 일제 서명하는 행위 등은 당직근무 소홀로 간주

■ 출동·교육훈련·부대 내 대기 등 각종 근무 시 승진시험 준비 등 근무 소홀 사례 발생지 않도록 유의

※ 현장근무 시 중대원·소대원 등 부대원과 현장에 위치하여 함께 근무, 당직근무라 하여 부대 내 위치 금지(부대 복귀 시 순찰 등 당직근무)

→ 근무 소홀 사례 적발 시 해당 지휘요원 엄중 조치

②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바,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2019. 6. 30. 18:00부터 2019. 7. 1. 18:00까지 당직 근무를 하는 중이었다. 또한 망인이 속한 부대의 식사시간은 '조식 07:00부터 08:00까지', '중식 12:00부터 13:00까지', '석식 18:00부터 19:00까지'였고, 망인이 속한 부대는 교통지도·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교통중대로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의 업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원들이 자유롭게 운동, 취침, 취미활동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망인은 당직 근무 중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운동의 일환으로 ○○ 소유의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무경찰 지휘요원 가이드 북 2020」 책자에 의하면, 소대장·부소대장은 당

직 근무 시 휴게시간 4시간('22:00부터 02:00까지' 또는 '02:00부터 06:00까지') 외에는 행정반에서 정위치 근무를 하거나 취약지 순찰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망인은 석식시간이 종료된 2019. 6. 30. 19:00 후부터는 행정반에서 정위치 근무를 하거나 취약지 순찰을 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이 같은 날 19:34경 부대 연경장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2] 1. 가.의 2)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망인이 속한 부대에서 석식 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운동을 하였던 관행을 고려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스케이트보드는 일반적인 운동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고 속도감을 즐기는 운동에 해당하는바(망인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행위까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

절, 폐쇄성'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9. 7. 3.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감염내과)는 '수술 후 촬영한 영상 검사에서 골절된 뼈들이 제 위치에서 교정된 소견을 보여, 수술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보내주신 의무기록에는 2019. 7. 25., 2019. 8. 7.에 촬영한 발목 수술 부위의 X-ray 검사 결과만 있는데, 이 검사에서 수술 부위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주치의는 망인에 대하여 약 14주간의 안정가勁을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약 4주가 지난 2019. 8. 1.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부대 복귀와 잔류를 강력히 희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의 거동 불편으로 인하여, 망인은 일근 근무 시에는 ① 교통대원 파견경찰서 현장점검, ② 잔류대원 면담과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당직 근무 시에는 ③ 잔류대원 면담과 파견지 대원 전화통화 생활지도, ④ 중대 내 순찰, ⑤ 영외활동자 관리, ⑥ 청소 상태 확인, ⑦ 점호, ⑧ 복무규율 위반 여부 확인 및 생활지도, ⑨ 교육훈련 및 체력 단련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경위 ○○이 대신 수행을 하였고, 경비 상황 발생 시에는 행정반장 ○○과 타 부소대장이 대신 출동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수술 경과, 부대 복귀 경위, 부대 복귀 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9. 8. 1.부터 부대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감염내과) 역시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가 안정화

되고 통증이 줄어든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위축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치료 경과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여 수행한 것이 수술부위 감염이나 패혈성 쇼크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의 선행사인으로는 '수술부위 감염(의증)' 외에도 '독소 쇼크(의증)'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감염내과)는 '망인이 설사, 구토 등 장염 소견을 호소하기도 하여, 위장관 감염도 고려할 수 있고, 뇌 MRI에서 뇌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기도 하여 뇌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장염' 또는 '뇌염'도 패혈성 쇼크의 선행사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아대학교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본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조사된 기록에 의하면, 2019. 7. 3. 병원에서 골절로 수술받은 후 한 달여 지난 시점인 2019. 8. 12.(여름) 11:00경 꽃게를 쪘서 점심 식사로 먹었고, 저녁(18:00경)에 오리탕을 먹었으며, 다음 날 2019. 8. 13. 고열과 구토, 설사, 의식 저하가 갑자기 발생하였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2019. 8. 14. 열과 설사가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아, 독소에 의한 장염으로 패혈성 쇼크가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의 선행사인이 '수술부위 감염' 외에 '장염' 또는 '뇌염'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장염' 또는 '뇌염'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